

#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1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금년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여,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편익을 증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(안 제5조)

- ▶ 취득시점 연장 : 2019년 12월 31일 ⇒ 2022년 12월 31일

나.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(안 제6조)

- ▶ 감면기간을 각 7년과 3년으로 조정하고 제3호 및 제4호 추가

다.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(안 제7조)

- ▶ 취득시점 연장 : 2019년 12월 31일 ⇒ 2022년 12월 31일

라.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(안 제9조)

- ▶ 감면기간 연장 : 2019년 12월 31일 ⇒ 2022년 12월 31일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1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 : 평창군 공고 제2019-1287호(2019.10.7. ~ 2019.10.21.)

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(기획담당관-1646/2019.10.17.)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담당관-1646/2019.10.17.)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(주민복지과-8466/2019.10.17.)

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: 붙임 1

##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19년 12월 31일”을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“10년””을 ““7년””으로, ““4년””을 ““3년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호(중전의 제2호) 중 ““6년””을 ““5년””으로, ““4년””을 ““3년”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외의 본문의 “5년”을 “7년”으로 하고,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4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의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하고,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2019년 12월 31일”을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2019년 12월 31일”을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

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**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50조제1항 또는 「수산업·어촌발전 기본법」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<u>2019년 12월 31일까지</u>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제6조(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</p>	<p>제5조(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2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같다. 다만, 같은 법 제121조의5 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.

1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"5년"을 "10년"으로 하고, "2년"을 "4년"으로 한다.

<신 설>

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"3년"을 "6년"으로 하고, "2년"을 "4년"으로 한다.

<신 설>

제7조(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(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

----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.

1. -----  
-----  
-----  
"7년"----- "3년"-----.

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외의 본문의 "5년"을 "7년"으로 하고, "2년"을 "3년"으로 한다.

3. -----  
-----  
----- "5년"-----  
---- "3년"-----.

4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의 "3년"을 "5년"으로 하고, "2년"을 "3년"으로 한다.

제7조(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세특례제한법

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"지방세 감면"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다만, 이 법(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)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.

1.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·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### 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제20조(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)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(이하 "시설현대화사업"이라 한다)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차장,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·개량·보수하는 사업은 시장 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, 점포 및 상인의 숫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3. 30., 2015. 2. 3., 2016. 12. 2., 2018. 8. 14.>

1. 상업시설: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, 수리
2. 공동시설: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, 창고, 상인교육시설, 전기·가스·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·개량·보수 및 관광(테마)거리 등의 조성



3. 고객편의시설: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, 진입로, 화장실,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·확장 및 수리 등

3의2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·확장 및 보수 등

3의3. 홍보시설: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, 전광판, 방송시설 등의 설치·개량·보수

4.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

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, 사업별 지원한도,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,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, 절차 및 사후관리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 3. 29.>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전기·가스·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·개량·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2. 12. 11., 2015. 2. 3.>

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·보조하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3. 29., 2017. 7. 26.>

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비가리개 설치를 위한 비용의 지원·보조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「건축법」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·축조신고에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6. 3. 29.>

1.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

2. 비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

[전문개정 2010. 6. 8.]

[붙임 2]

##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재무과장 이대환
연락처	(033) 330-2270